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7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김정재·김예지·김희국

추경호 · 송언석 · 정진석

최연숙 • 이종배 • 이주환

장제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,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,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각 사안을 다루는 경우 법적인 사항부터 학생의 심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·개발 및 보급하고,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③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·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.

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"를 "지역위원회,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"로 한다.

③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・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
	을 반영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
	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
	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
	•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9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	제9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
설치) ①・② (생 략)	설치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문
	제 해결 및 분쟁 조정에 대한
	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
	<u>둘 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	⑤ 지역위원회, 제2항에 따른
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	실무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자문위원회의
정한다.	